

의안번호	제 314 호
의결년월일	1995. 12. 28. (제 40 회)

의결 사항	원안 가결
----------	----------



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년월일	1995. 12. 11.

#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314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5. 12. // 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## 1. 개정사유

- 주민등록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사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,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는 내무부장관 승인없이 당해 지방자치 단체조례에 의거 하급기관에 권한 위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규정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(관련근거 : 지방 13207-847. 95. 6. 13호와 관련임)

## 2. 주요골자

- 제2조(권한의 위임)의 제3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사항과 제4호 법 제21조 위반자에 조치를 각각 삭제

## 3. 본 문

고성군 조례 제 호

#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권한의 위임)의 '3호 및 4호'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권한의 위임)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</p> <p>2.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</p> <p>3.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</p> <p>4.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</p>	<p>제2조 (권한의 위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현행과 같음</p> <p>2. 현행과 같음</p> <p>3. <u>삭제</u></p> <p>4. <u>삭제</u></p>